

부고

▲신영준(한서골재 대표)·영길(춘천 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영재(강원도의원)씨 모친(김화실씨)상, 이숙자, 고석예, 이선숙씨 시모상=10월31일 오전 11시 별세. △발인=2일 오전 7시(장례미사=2일 오전 8시 흥천성당) △장지=흥천성당 묘원 △빈소=흥천아산병원 장례식장 특A실 △연락처=010-5369-6669

공사비에 적정 '환경관리비' 반영

국토부, 산출기준 제정 추진
소음·오폐수 등 비용성격따라
직접-간접공사비로 구분키로

정부가 건설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환경관리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을 제시하고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이다.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음벽·방진고무 등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철거하거나 시험검사비·점

검비 등의 소액 항목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환경관리비는 산정·관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분명하지 않아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 계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하는 지침에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직접공사비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다.

간접공사비는 시험검사비·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계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적정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주변의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남기자 knp@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 공사비에 적정 '환경관리비' 반영

그러나 일각에서는 직접공사비의 경우 요율이 아닌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견적 등으로 산출하게 되면 적정 수준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발주기관이 환경관리비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길 여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관리비를 견적 등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과 요율 적용 방식 등 어느 것이 옳다고 얘기하긴 힘들다"면서도 "적정 수준의 환경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환경관리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도 분명히 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는 지금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은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도 제시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해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들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일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등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 '트리플 강세'인데...

건설 지표만 '뒷걸음'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등 경기지표가 일제히 상승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건설업만 유독 '뒷걸음질'치고 있다.

'깜짝'성장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체 산업생산은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0% 증가 후 8월(-0.1%)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두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등 3대 지표가 지난해 6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1.3%)과 광공업(0.1%) 생산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2015년 7월(1.7%) 이후 최고치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도 2월(3.2%) 이후 가장 높은 3.1% 증가했다. 추석명절과 더불어 역대 최장 연휴가 소비지표 개선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 역시 5.5% 증가했다. 앞서 7월(-5.3%)과 8월(-0.7%)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 설비투자 수준이 굉장히 좋았다"며 "한달 정도 조정될 수는 있어도 수출호조세와 주식시장 개선, 소비심리 호조 등 전반적으로 상방요인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9월 건설기성(분변, 계절조정)은 9조7770억원으로 전월(9조9940억원)

대비 2.2% 감소했다. 8월(-1.7%)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세다.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토목실적은 0.2% 증가했으나 건축실적이 2.9%나 줄었다.

때문에 전산업 생산 기여도(전월 대비)도 건설업만 유일하게 마이너스(-0.16%)를 기록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3개월째 감소했다.

9월 건설수주는 11조51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0.8% 줄었다. 공장·창고 및 사무실·점포 등 건축수주가 2.0% 증가했지만 철도와 함안,

공항 등 토목수주가 14.7%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어렵사리 전분기 대비 보험세를 유지한 가운데 3분기 전체 산업생

산은 1.3%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약세는 향후 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건설투자 연착륙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내수회복의 지속성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용시장의 경우 건설업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8월 전체 신규 취업자수가 30만명선 아래로 곤두박질쳤다가 9월 건설업 취업자수가 10만명선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와 관련, "(올해 성장률 3% 달성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성장률이 3% 이하로 내려가면 고용대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부동산 냉각기와 소비투자 위축 등 성장률이 높아질 유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9월 3대지표 15개월만에 모두 '쑥'
건설기성·생산기여도·수주는 '뚝'
건설투자도 보험세... 불안한 흐름
향후 국내 경제 하방리스크 우려



정홍식 변호사의 하자소송 짚어보기

1. 개요

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인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동 조건 제26조에 의하여 준공대가 수령 전에 간접비의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시점이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이어야 하는지,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이면 되는지에 관해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소개한다.

2.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3가합 16669판결의 경우, ①장기계속계약은 공사비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②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적어도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판결 참조), ③당초에 장기계속계약이었으나 나중에 계속비 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종결한 차수별 계약이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준공대가의 지급이 완료된 차수의 간접비 증액분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전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나

장기계속계약의 간접비 조정신청

11261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5. 21. 선고 2012나6578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합20183판결 등이 있다.

3.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는 판례

반면, 총괄 계약을 기준으로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는 대표적인 판례로서,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판결이 있는바, 법원은 ①총괄계약도 전체 공사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총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정하는 독립성을 가지는 계약인 점, ②총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차수별 계약이 아닌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되어 대법원 2014다235189로 계류 중에 있다.

4. 결론

이처럼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지 않는 경우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유사 사건들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미리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해 둘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간접비 청구에 있어서는 증액된 공사비가 적정한지, 증액분이 변경계약의 내용에 이미 반영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겠다. 법무법인 화인